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 민사부

결정

사건 2012타기705 간접강제
신청인 1. 주식회사 풍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80-1
대표이사 최한명
2. 류진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성진

피신청인 별지1 목록 기재 신청인들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본입니다.
2012년 8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윤종민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경우, 피신청인별로 각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1. 별지2 목록 기재와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 유인물을 게시, 배포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2. 별지2 목록 기재와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또는 피신청인들의 트위터를 포함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게재하거나,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행위
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70에 있는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신청인 주식회사 풍산(이하 '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건물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 현수막 등 내용과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 유인물을 이용하여 1인 시위, 2인 이상이 반경 30m 이내의 거리를 두고 하는 유사 1인 시위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4. 위 다.항 기재 신청인 회사의 건물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 현수막 등 내용과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피켓, 현수막을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한 차량을 주·정차시키거나 왕복하여 운행하는 행위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241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4. 23. 피신

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취지 기재 각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정본이 2012. 4. 26.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에게 각 송달되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2012. 5. 10.부터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 이후까지도 신청인 회사 건물부지로부터 100m 내 도로변이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신청인 회사의 부산 사업장 정문 앞 등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금지를 명한 표현들과 내용이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인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표현을 기재한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또는 피신청인들의 트위터를 포함한 SNS에 게재하거나,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들에게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들이 현수막, 피켓 등에 사용하고 있는 표현내용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금지한 표현내용과 동일한 취지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으로서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으로서의 적법한 의사표현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2012. 5. 10.부터 신청인 회사 건물부지로부터 100m 내 도로변이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신청인 회

사의 부산 사업장 정문 앞 등에서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표현을 기재한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또는 피신청인들의 개인 트위터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언론기사가 기사화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사용한 별지4 목록 기재 표현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금지를 명한 별지2 목록 기재 표현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풍산그룹이 고용승제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피에스엠씨(2011. 3. 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풍산마이크로텍, 이하 '피에스엠씨'라 한다)의 지분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지분매각 후 1년 만에 피에스엠씨 소속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풍산그룹의 회장인 신청인 류진과 위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청인 회사는 피에스엠씨의 정리해고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풍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풍산홀딩스(이하 '풍산홀딩스'라 한다)가 그 자회사인 피에스엠씨의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위 지분매각이 부당한지, 이러한 지분매각과 이후 피에스엠씨 소속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에 신청인들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표현금지를 명한 일부 내용(신청인들이 부당하게 피에스엠씨 지분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표현행위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금지를 명한 다른 행위들(신청인 회사의 건물부지 내에 승낙 없이 출입하는 행위, 신청인 회사의 건물 부지 근처에서 임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을 하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신청인 회사 건물 및 부속시설물

등을 손괴하는 행위, 신청인 류진의 주거지 근처에서 물건 등을 투척하고, 출입을 방해하며,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별지2 목록 기재 내용과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신청인 류진 등 임원들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사실, ②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금지한 별지2 목록 기재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 벽보 등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현수막 등의 표기 내용을 신청인들이 공장부지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사냥꾼 투기자본에 피에스엠씨를 부실 기습매각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하고 함으로써 계열사를 정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에스엠씨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풍산그룹의 해결노력 촉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 ③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 전후 국토대장정 유인물에 기재된 별지4 목록 순번 25 기재 문구를 회사명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배포하고, 피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풍산마이크로텍지회(이하 '피신청인 노조'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같은 목록 순번 12 내지 14 기재 문구가 사용된 사진을 삭제하는 등 신청인들이 지적하는 표현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④ 피신청인 노조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트위터 표현에 있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고, 일부 조합원의 트위터 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금지한 표현을 사용한 내역이 없는 사실 등이 소명되고, 위 소명사실에다가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표현행위 내용이 풍산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피에스엠씨의 지분매각과 이후 행해진 소속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에 관하여 그룹회장 등에 대한 책임추구라는 점에서 피에스엠씨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의 공

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는 점, 그 표현내용이 비판의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신청인들을 모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등 의견 내지 평가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7.

재판장

판사

박희승



판사

정문경



판사

오택원

